

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(제25조관련)

1. 사무실 :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
2. 강의실 :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·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추는 것
3. 실습·체험실 :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
4. 교육용기자재

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

1. 빔프로젝터 1개(스크린 포함)
2. 소화기(단면절개:斷面切開) : 3종 각 1개
3. 경보설비시스템 1개
4. 스프링클러모형 1개
5.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개
6.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1개
7.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1개
8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기구 각 1개